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첫째 아들 감싸려父 ‘내가 횡령’... 친족상도례, 폐지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씨〉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박진홍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진홍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씨의 형수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러나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박씨 형제의 부친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씨 형제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친족상도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고대로마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입니다. 형법 제 3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 이번 박수홍씨 사건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사실상 친족의 개념이 약해지는 현대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고요.

2012년 3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친족관계가 가까운지에 따라 절도죄 처벌여부를 차별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현재는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친형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검찰은 아버지가 박수홍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죠.

친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매니지먼트 법인 돈을 무단 사용한 부분은 회사가 피해자라서 친족상도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홍씨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박수홍씨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까요?

과거와 달라진 사회현상을 고려한다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봉건사회의 가족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그 행위를 탓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가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친고죄로 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의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더 개별화되고 또 개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않으면 법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위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